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고용과 임금 추이 예측

한주희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앰허스트 캠퍼스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초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데 이어, 올 2014년 초 국회 연설에서는 더 높은 수준인 10.10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혜택 수혜자가 감소함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환영하였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가져오고, 경기침체를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당파 국회 기관인 의회에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지난 2월 18일 최저임금을 9달러와 10.10달러로 인상할 경우, 고용, 소득, 빈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추산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¹⁾ 이 글에서는 이를 요약, 정리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최저임금 인상안의 주요 내용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초 의회 연설에서 201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9달러로 인상하고,

1) 의회에산처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cbo.gov/publication/44995>).

2016년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올해 초 의회 연설에서는 다시 10.10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의회에산처 연구보고서는 이 두 가지 인상안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산처 보고서가 분석한 두 가지 인상안은 인상 시기 및 물가상승률 연동 등에 있어서 원래 오바마 행정부의 인상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제안한 9달러 인상안에서는 이후 물가상승률을 연동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의회에산처 보고서는 9달러 인상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연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추산하였고, 올해 초 제안한 10.10달러 인상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으나, 의회에산처 보고서는 연동한다는 가정하에서 추산하였다.

10.10달러 인상안

현재 7.25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4년 7월 1일에 8.20달러, 2015년 7월 1일에는 9.15달러, 2016년 7월 1일에는 10.10달러까지 3년에 걸쳐 약 40%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인상하는 안이다. 이 인상폭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인상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팁을 수입원으로 하는 음식점 웨이터 등의 근로자들은 팁을 제외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2.13달러에서 4.9달러로 인상하고, 2017년부터는 연방 최저임금의 70% 수준에 이를 때까지 (2019년으로 예상) 매년 95센트씩 올리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9달러 인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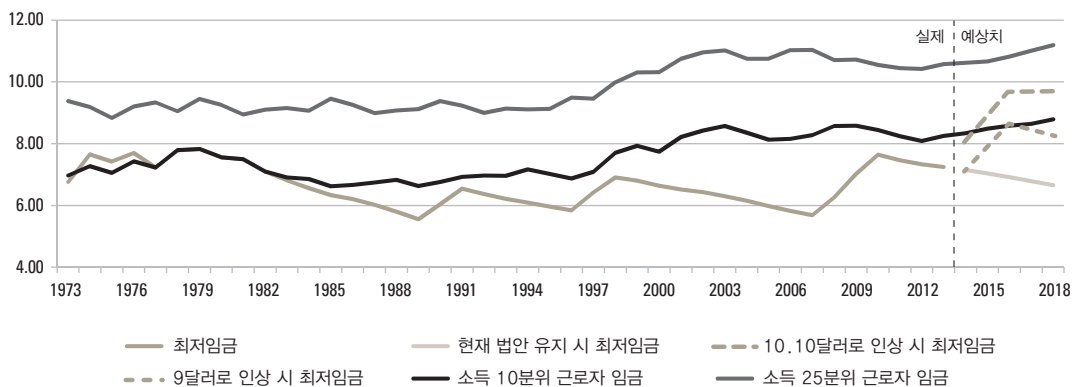
현재 7.25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5년 7월 1일까지 8.10달러, 2016년 7월 1일에는 9달러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지 않는 방안이다. 팁을 수입원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처음부터 같은 인상률을 적용한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지 않는 점, 인상폭, 적용 근로자 수,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락한다

는 점 등이 10.10달러 인상안에 비해 경제학 연구들이 분석해왔던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 유형과 더 유사하다.

■ 기존 최저임금 흐름 및 현재 최저임금 상황

[그림 1]은 1973년부터 2018년까지(2013년 이후는 예측)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10/100분위(이후부터 10분위로 표기) 시급, 25/100분위(이후부터 25분위로 표기) 시급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명목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지 않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73년부터 1982년까지는 실질 최저임금이 10분위 시급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가, 1982년 이후부터는 10분위 시급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유지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10분위 임금과 25분위 임금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오다가 이후부터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당시 5.15달러에서 현재의 7.25달러로 인상한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유지될 경우, 10분위 임금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달러로 인상할 경우 2016년에는 최

[그림 1] 미국 근로자 시급 및 최저임금 추이(1973~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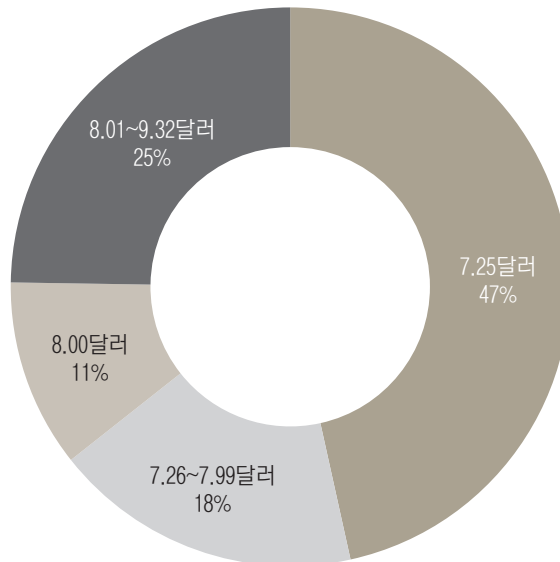
자료 : CBO report, "The Effects of a Minimum-Wage Increase on Employment and Family Income," <Figure 1>.

저임금이 10분위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10.10달러로 인상할 경우 2015년에는 최저임금이 10분위 임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최저임금 이외에도 주 정부 또는 시, 카운티 단위의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있다. 2014년 1월 현재, 2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지역 최저임금을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이 중 11개 주에서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자동 인상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 D.C.를 비롯한 5개 주에서는 이후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이 지역의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2014년 7월 1일 주 최저임금을 8달러에서 9달러로, 2016년에는 10달러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도 샌프란시스코의 최저임금은 현재 더 높은 10.74달러에 이른다.

[그림 2]는 주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미국 내 전체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최저임금에 따른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근로자의 47%가 현행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따르고 있는 주에서 살고 있으며, 18%는 7.26~7.99달러를 적용하고 있는 주에, 11%는 8달러를 적용하고 있

[그림 2] 2014년 현재 미국 전체 근로자 기준, 각기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해당 주에 거주하는 근로자 분포



자료 : CBO report, "The Effects of a Minimum-Wage Increase on Employment and Family Income," <Figure 2>.

는 주에, 25%는 8.01~9.32달러를 적용하고 있는 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 수치는 각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주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의 분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어렵지 않은 가정 출신으로 10대 청소년 파트타임 근로자들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2013년 시급 기준 7.25달러(최저임금)~7.50달러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가 5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이들 가운데 75%는 20세 이상이었으며, 40%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 근로자들이 속한 가구의 연 소득 중앙값은 3만 달러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 최저임금이 고용과 소득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은 저임금 근로자들이다. 보고서는 현행 최저임금이 유지될 경우 2016년에 11.50달러 미만의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을 저임금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특정 인구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 이 저임금 근로자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표 1>은 현행 최저임금이 유지될 경우 2016년에 저임금 근로자가 될 집단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전체 근로자의 24%가 저임금 근로자에 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령별로는 16~19세 근로자 가운데 87%, 2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22%가 저임금 근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 저임금 근로자 기준으로는 88%가 20세 이상 근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이 저임금 근로자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여성 근로자의 28%, 남성 근로자의 21%가 저임금 근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수준별로는 고교 중퇴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58%, 고졸 근로자의 30%, 대졸자의 7%가 저임금 근로자에 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전체 저임금 근로자 대비 70%가 고교 졸업자일 것으로 추산되었다. 평균 주 35시간 미만 근로자 가운데 58%, 35시간 이상 근로자 가운데 16%가 저임금 근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0%,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19%가 저임금 근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 인구 특성별 2016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저임금 근로자 분포

(단위 : %)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가 될 비율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 해당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
연령		
16~19세	87	12
20세 이상	22	88
전체	24	100
성별		
여성	28	56
남성	21	44
전체	24	100
교육수준		
고교 중퇴	58	21
고졸/대학교육 일부	30	70
4년대 졸업	7	10
전체	24	100
주 평균 근로시간		
35시간 미만	58	47
35시간 이상	16	53
전체	24	100
근로 사업체 규모		
50인 미만	30	48
50인 이상	19	52
전체	24	100

자료 : CBO report, "The Effects of a Minimum-Wage Increase on Employment and Family Income," <Table 2>.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반적으로는 일부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대신, 훨씬 더 많은 저임금 근로자의 가구소득이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빈곤선²⁾ 이하의 가구 수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는 최저임금이 고용과 소득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10.10달러로 인상할 경우에 전체 고용규모는 50만 명 정

2) 빈곤선은 가구원 수와 가구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6년 예상 빈곤선은 3인 가구의 경우 세전소득이 18,70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세전소득이 24,1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시계열 데이터의 중앙 예측치이기 때문에, 변화 범위를 고려하면, 아주 소폭의 고용 감소에서 많게는 100만 명의 고용감소로 이루어질 확률이 67%인 것으로 추산된다.

〈표 2〉 2016년 하반기 기준, 최저임금 인상이 연간 고용, 소득, 빈곤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

	10.10달러 안	9달러 안
고용규모 변화		
중간계측	- 50만 명	- 10만 명
가능 범위	- 100만 명	- 20만 명
제한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수	1,650만 명	760만 명
연간 실질임금 증감액(2013년 물가기준)		
빈곤선 미만 소득 가구	50억 달러	10억 달러
빈곤선 이상 ~ 3배 미만 소득 가구	120억 달러	30억 달러
빈곤선 3배 이상 6배 미만 소득 가구	20억 달러	10억 달러
빈곤선 6배 이상 소득 가구	- 170억 달러	- 40억 달러
빈곤선 이하 인구 규모	- 90만 명	- 30만 명

자료 : CBO report, "The Effects of a Minimum-Wage Increase on Employment and Family Income," <Table 1>.

그러나 반대로 현재 10.10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상승의 혜택을 보게 되는 근로자는 1,6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수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 실업을 하거나,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혜택을 보게 되는 근로자 수만을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더해 현재에도 10.10달러보다 조금 더 높은 시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일부도 추가적으로 임금상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예로 들면 이들은 현재에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더 높은 기술수준을 가진 이들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기술수준을 가진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임금을 인상해서 새롭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과 차별성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받는 임금소득 상승 효과는 총 310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이는 2016년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완료될 경우 하반기 총임금소득에 두 배를 곱해 연간

인상액을 추산한 결과로, 2013년 물가지수 기준 금액이다. 그러나 이 금액의 전부가 저소득 가구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저소득 근로자(개인)가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310억 임금소득 상승분의 19%만이 빈곤선 이하 소득 가구에 돌아가며, 29%는 빈곤선 대비 3배 이상 소득 가구에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고, 상승된 물가를 적용하면 실질임금은 일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을 한 경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나,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됨으로써 지출이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실질임금의 증감은 <표 2> 하단에 정리되어 있다. 빈곤선 미만 소득 가구 전체가 혜택을 보는 실질임금 상승 총액은 50억 달러, 빈곤선 이상~3배 미만 소득 가구는 120억 달러, 빈곤선 3배 이상~6배 미만 소득 가구는 20억 달러의 총실질임금 상승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빈곤선의 6배 이상 소득 가구는 총 170억 달러의 실질임금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빈곤선 미만 소득 가구의 실질임금이 상승함으로써, 빈곤선 미만의 대략 4,500만 명 가운데 90만 명이 빈곤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빈곤선 6배 이상 소득 가구에게 돌아갈 총 170억 달러의 손실을 가구당 손실로 계산하면 절대적으로 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3>은 2016년 하반기 기준, 가구별 소득수준

<표 3> 2016년 하반기 기준,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른 예상 근로자 분포

(단위 : %)

빈곤선 대비 가구소득 비율	전체 근로자 대비 구성비	저임금 근로자 대비 구성비
빈곤선 미만	6	20
빈곤선 이상 1.5배 미만	6	16
빈곤선 1.5배 이상 2배 미만	7	14
빈곤선 2배 이상 3배 미만	16	18
빈곤선 3배 이상 6배 미만	39	24
빈곤선 6배 이상	26	9
전체	100	100

자료 : CBO report, "The Effects of a Minimum-Wage Increase on Employment and Family Income," <Table 3>.

에 따른 근로자 분포를 추산한 것이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빈곤선 미만 소득 가구에 속한 근로자 수는 6%, 빈곤선 이상 1.5배 미만 소득 가구에 속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6%, 빈곤선 3배 이상 6배 미만 소득가구에 속한 근로자 수는 39%, 그리고 빈곤선 6배 이상 소득 가구에 속한 근로자는 2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당 11.5달러 미만의 시급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빈곤선 미만 소득 가구에 속한 근로자는 20%, 빈곤선 6배 이상 소득 가구에 속한 저임금 근로자는 9%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최저임금이 유지될 경우 2016년 연평균 실질 가구소득과 최저임금을 각각 10.10달러와 9달러로 인상하였을 경우의 2016년 연평균 실질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가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2016년 7월 1일자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하반기 예상 소득에 두 배를 한 결과이며, 물가는 2013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빈곤선 미만 소득 가구의 2016년 한 해 평균 소득은 현행 최저임금이 유지될 경우 10,700달러에

<표 4> 2016년 하반기 기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평균 실질 가구소득 예측치

(단위 : 2013년 물가지수 기준 USD)

빈곤선 대비 가구소득 비율	현행 최저임금이 유지될 경우 연간 평균 실질 가구소득(\$)	연간 평균 실질 가구소득 변화	
		증감액(\$)	증감률(%)
10.10달러로 인상할 경우			
빈곤선 미만	10,700	300	2.8
빈곤선 이상 1.5배 미만	26,300	300	1.1
빈곤선 1.5배 이상 2배 미만	36,300	200	0.6
빈곤선 2배 이상 3배 미만	1,400	200	0.4
빈곤선 3배 이상 6배 미만	86,600	*	**
빈곤선 6배 이상	182,200	-700	-0.4
9달러로 인상할 경우			
빈곤선 미만	10,700	100	0.9
빈곤선 이상 1.5배 미만	26,300	100	0.4
빈곤선 1.5배 이상 2배 미만	36,300	100	0.3
빈곤선 2배 이상 3배 미만	1,400	100	0.2
빈곤선 3배 이상 6배 미만	86,600	*	**
빈곤선 6배 이상	182,200	-200	-0.1

자료 : CBO report, "The Effects of a Minimum-Wage Increase on Employment and Family Income," <Table 4>.

서 10.10달러로 인상할 경우 300달러(2.8%) 늘어난 11,000달러로 실질 가구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빈곤선 이상 1.5배 미만 소득 가구의 경우 26,300달러에서 300달러(1.1%)가 늘어 실질 가구소득은 26,600달러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승률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들어 빈곤선 3배 이상 6배 미만 가구에서는 연간 증감액이 50달러 미만, 또는 증감률이 0.05% 미만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이 유지될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빈곤선 6배 이상 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실질 가구소득이 700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증감률은 -0.4%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인상이 연방 예산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은 고용과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연방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직접적으로는 연방 정부에 고용된 일부 시급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간접적으로는 정부에서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연방 지출과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편으로는 실질임금이 상승한 근로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동시에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수가 줄어들어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자가 된 경우, 더 많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된 소비자 층은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몇 해 동안은 전자의 효과가 후자의 효과를 상쇄해 연방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각계의 반응

백악관 및 민주당 반응

오바마 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위원장과 벤티 스티븐슨(Betsy Stevenson) 위원은 이 의회에산처 보고서에 대해 성명서³⁾ 및 기자회견담화⁴⁾를 통해 이 보고서의 대부분 내용은 맞지만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의회에산처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의 경험연구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고용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회에산처의 보고서 역시 고용 축소 규모의 범위를 0~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중간값인 50만 명으로 추산한 것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경제학자들의 경험연구들을 인용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소득이 늘어나는 근로자 수를 1,6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현재에도 10.10달러를 조금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800만 근로자들의 임금 역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반응⁵⁾

당시 동계 정기회의를 열고 있던 미 최대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룸카(Richard Trumka)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회에산처

3)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2/18/congressional-budget-office-report-finds-minimum-wage-lifts-wages-165-million-worker>

4)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02/18/record-call-jason-furman-and-betsy-stevenson-cbo-report-minimum-wage>

5) <http://blogs.wsj.com/washwire/2014/02/18/unions-dispute-cbo-report-on-impact-of-higher-minimum-wage>

보고서 내용에 대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때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보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경제학자들이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고용감소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산처의 보고서를 신경 쓰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 반응⁶⁾

공화당은 최저임금이 고용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을 주로 부각시키며 최저임금 인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존 베이너(John Boehner) 하원 의장 대변인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을 의회에산처 보고서가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최저임금 인상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일자리 감소를 비롯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지금 실업자인 미국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지 일자리가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서 일자리를 뺏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의 반응⁷⁾

몇몇 저명한 노동경제학자들은 의회에산처 보고서가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교 로렌스 카츠(Lawrence Katz) 교수는 보고서가 너무 정형화되고 오래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추정했는데, 더 양질의 경험연구들을 바탕으로 했다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훨씬 적거나 거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수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에서는 다른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들에 대한

6) <http://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14/02/18/cbo-minimum-wage-jobs/5582779/>

7) http://www.nytimes.com/2014/02/19/business/mixed-results-in-us-study-of-increasing-minimum-wage.html?_r=0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 오래된 정설이라고 보고서에 동의했다. 중도우파적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분석가 제임스 셔크(James Sherk)는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엔 수백만 개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KLI**